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직접 긴급보수,
반복적 지반침하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등 》
■ 김정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473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김정재의원 대표발의(제2210473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의 직접 긴급보수 등 조치 근거 마련 (안 제22조의2제4항·제5항 및 제38조제4항·제5항 신설)	3
나. 반복적 지반침하 피해 발생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도입 (안 제34조의2 신설 및 안 제35조제1항제3호)	9
다. 지하안전정보체계 관리대상 추가 등 (안 제47조)	17

I. 김정재의원 대표발의(제2210473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정재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5. 12.

다. 회 부 일 : 2025. 5. 1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련자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안전조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직접 안전조치를 실시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지하시설물관리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안전점검 결과, 사고발생 사실, 시설물 정비계획 등을 제출·통보 또는 보고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인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제출·통보 또는 보고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지하안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집중시키고 행정상 제출·통보 또는 보고 행위를 간소

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지반침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직접 긴급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안전점검결과, 사고발생 사실 등의 자료를 입력한 경우 이를 해당 자료의 제출·통보 또는 보고 행위로 간주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제34조의2 및 제38조 등).

3. 검토의견

가.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의 직접 긴급보수 등 조치 근거 마련(안 제22조의2제4항·제5항 및 제38조제4항·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u><신설></u>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긴급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u> <u>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지하개발사업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u>
제38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38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시설물에 의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긴급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u>

현행	개정안
<신설>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관계인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안은 ‘지하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이, ‘지하시설물’에 의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긴급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¹⁾

지하개발 사업 또는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의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과 관련된 현행법 규정을 살펴보면,

현행법 제22조의2제1항²⁾은 ‘지하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란 개발·이용·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굴착, 매설, 양수(揚水) 등의 행위를 말한다.
4.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³⁾으로 하여금 지하개발사업자⁴⁾에게 주변 지반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제38조제1항⁵⁾은 ‘지하시설물’에 의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지하시설물관리자⁶⁾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주변 지반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국토교통부장관과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조치명령서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안전조치의 내용 및 사유
2. 안전조치의 방법
3. 안전조치의 완료기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9. “승인기관의 장”이란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하안전평가를 말한다.
7. “지하개발사업자”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시설물에 의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지하시설물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로 본다.

함)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의 관계인이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하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행법 제22조의2제3항7)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시설물과 관련해서는 현행법 제38조제3항8)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 제54조제1항9)에서는 지하개발 사업 또는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안전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2.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현행법에 따른 지반침하 사고예방 긴급안전조치 등 관련 조문 정리】

구분	지하개발 사업 관련 지반침하 위험(제22조의2 관련)	지하시설물 관련 지반침하 위험(제38조)
지반침하 발생 또는 발생 우려	<u>지하개발 사업</u> 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u>발생</u> 하였거나 <u>발생할 우려</u> 가 있는 경우	<u>지하시설물</u> 에 의하여 지반침하가 <u>발생</u> 하였거나 <u>발생할 우려</u> 가 있는 경우
안전조치 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u>승인기관의 장</u> 이 <u>지하개발사업자</u> 에게 안전조치를 명령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u>지하시설물의 관계인*</u> 에게 안전조치를 명령 *지하시설물의 관계인(영 제30조) :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안전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u>공사중지 명령</u> (전부 또는 일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u>직접 안전조치</u> (「행정대집행법」 준용)
<u>벌칙</u>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동 규정들에 따르면, 현행법은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안전조치명령에 따라 지하개발 사업의 시행 또는 지하시설물의 관리에 책임이 있는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 등이 실시하고,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 등이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벌칙 부과를 통해 이행을 강제하거나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안전조치를 취하는 구조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사고 발생 위험이 급박한 경우에는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 등에게 안전조치를 명령하고 그 이행을 기다려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바,

개정안은 이같은 상황에서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직접 긴급 보수를 하는 등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지하개발 사업의 시행 또는 지하시설물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안전조치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가 보수·보강 등 조치를 이행할 필요가 있는 측면을 고려할 때, 현행 법령을 유지하되 지하시설물 인근의 지반탐사¹⁰⁾와 지하개발 사업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지반침하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안전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나. 반복적 지반침하 피해 발생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도입
(안 제34조의2 신설 및 안 제35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34조의2(지반침하에 따른 특별안전점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반복적으로 지반침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안전점검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안전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반침하위험도	제35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① ----- ----- ----- -----

현행	개정안
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반침하 위험도평가서”라 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반침하 위험도평가의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	3. 제34조제4항 및 제34조의2제2항--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지하시설물¹¹⁾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외에 ‘반복적으로 지반침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도입하려는 것임.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에 대하여 현행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하시설물관리자¹²⁾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1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지하시설물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로 본다.

하고(제34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통보받은 안전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제34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지반침하위험도평가¹³⁾의 실시를 명할 수 있으며(제34조제4항),¹⁴⁾

1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지반침하위험도평가”란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구조적·지리적 여건, 지반침하 위험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지반침하 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탐사장비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定量)·정성(定性)적으로 위험도를 분석·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1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서(이하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라 함)를 제출하여야 하고(제35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함)을 지정하여야 하며(제35조제2항), 중점관리 대상에 대한 보수·보강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반침하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 지정을 해제(제35조제5항)하여야 함.¹⁵⁾

1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반침하위험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라 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과 지반침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관계인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점관리대상이 보수·보강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반침하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의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 지정을 해제·고시하여야 한다.

⑥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절차,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중점관리대상의 지정·고시 및 변경·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현행법에 따른 안전점검 등 체계】

제34조 제1항	○지하시설물 관리자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u>정기적으로 안전점검</u> 실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과 통보
제34조 제2항	○시장·군수·구청장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u>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u>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제34조 제4항	○시장·군수·구청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 결과 <u>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u>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통보하여 <u>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u>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u>지반침하위험도평가 실시 명령</u> 가능
-------------	--



제35조 제1항	○지하시설물 관리자 -<u>지반침하위험도평가 실시</u> →시장·군수·구청장에게 <u>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 제출</u>
-------------	---



제35조 제2항	○시장·군수·구청장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u>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경우</u> →<u>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 지정·고시</u>
-------------	--



제35조 제5항	○시장·군수·구청장 -보수·보강 등 정비사업¹⁶⁾의 시행으로 <u>지반침하 위험이 없어진 경우</u> →<u>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 지정 해제·고시</u>
-------------	--

※자료: 현행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관련 조문을 요약하여 구성

1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중점관리대상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보강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비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요구받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이행한 지하시설물관리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중점관리대상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에 비하여, 개정안은 현행 안전점검 등 체계에 ‘특별안전점검’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반복적으로 지반침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안전점검 실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4조의2제1항),

권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안전점검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를 명할 수 있도록(안 제34조의2제2항) 하는 등의 내용을 신설하고 있으며,

안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를 명한 이후의 절차는 현행법 제35조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고시하고(현행법 제35조제2항), 중점관리 대상에 대한 보수·보강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반침하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 지정을 해제·고시(현행법 제35조제5항)하게 됨.

【개정안에 따라 특별안전점검이 추가된 안전점검 등 체계】

현행법		개정안 (특별안전점검 추가)	
제34조 제1항	○지하시설물 관리자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u>정기적으로 안전점검</u> 실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과 통보	안 제34조의2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반복적으로 <u>지반침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u> 사유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u>특별 안전점검 실시 권고</u> 가능
제34조 제2항	○시장·군수·구청장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u>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u>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		↓	
제34조 제4항	○시장·군수·구청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 결과 <u>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u>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통보하여 <u>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u>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u>지반침하 위험도평가 실시 명령</u> 가능	안 제34조의2 제2항	○시장·군수·구청장 - <u>특별안전점검 결과</u>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통보하여 <u>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u>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u>지반 침하위험도평가 실시 명령</u> 가능
↓		↓	
제35조 제1항	○지하시설물 관리자 - <u>지반침하위험도평가 실시</u> →시장·군수·구청장에게 <u>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 제출</u>		
↓		↓	
제35조 제2항	○시장·군수·구청장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u>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경우</u> → <u>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 지정·고시</u>		
↓		↓	
제35조 제5항	○시장·군수·구청장 -보수·보강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u>지반침하 위험이 없어진 경우</u> → <u>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 지정 해제·고시</u>		

※자료: 현행법 제34조 및 제35조, 개정안 제34조의2의 관련 조문을 요약하여 구성

이는 반복적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 등은 유사한 피해의 재발 가능성으로 인해 보다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측면이 있는바, 현행 법에 따른 정기적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실태점검 외에 ‘특별안전점검’을 추가로 실시하도록 하여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아울러, 지하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대하여 반복적인 지반침하 피해 발생 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하 안전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2025.5.27. 법률 개정으로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현장조사¹⁷⁾를 할 수 있게 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7.>

다. 지하안전정보체계 관리대상 추가 등(안 제47조)

현행	개정안
제47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연구·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47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u><신설></u>	<u>1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사항</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u><신설></u>	<u>2의2. 제22조의2 및 제38조에 따른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u>
3. ~ 8. (생략)	3. ~ 8.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②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통보 또는 보고한 것으로 본다.</u>
	<u>1. 제1항 각 호의 사항</u>
	<u>2. 제16조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검토 및 현지조사 결과</u>
	<u>3.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하는 사고 발생 사실</u>

현행	개정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u>지하안전평가</u> 전문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생략)	③ ----- ----- ----- -----지하개발 사업자, 지하시설물관리자 또는 지하 안전평가----- -----. -----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개정안은 ①지하안전정보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관리 대상 정보를 추가하고, ②지하안전정보체계에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제출·통보 또는 보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며, ③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지하개발사업자와 지하시설물관리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① 현행법 제47조제1항18)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지하안전관리에

1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연구·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평가서등에 관한 사항
3. 제25조·제28조·제32조 및 제5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재개업 신고, 등록말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대행실적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4. 제3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5.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6. 제4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7. 제46조에 따른 지반침하 사고 및 피해 현황·통계에 관한 사항

관한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연구·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 안전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한 관리 대상 정보로는 지하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제1호), 지하안전평가서등에 관한 사항(제2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재개업 신고, 등록말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대행실적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제3호) 등을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47조제1항은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한 관리 대상 정보에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호의2 신설), 제22조의2 및 제38조에 따른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2호의2 신설)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법 및 개정안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 포함 사항 비교】

현 행 법	개 정 안
1. 지하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신 설>	1. (현행과 같음) <u>1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u>
2. 지하안전평가서등에 관한 사항 <신 설>	2. (현행과 같음) <u>2의2. 제22조의2 및 제38조에 따른 긴급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u>

8.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행법	개정안
3.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재개업 신고, 등록말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대행실적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4.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5.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6. 중점관리대상의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7. 제46조에 따른 지반침하 사고 및 피해현황·통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 8. (현행과 같음)

※자료: 현행법 및 개정안 제47조제1항

개정안이 관리 대상 정보에 추가하려는 사항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호의2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은 현행법 제10조19)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지반침하

1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 ① 지하개발사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는 이를 승인하기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내용(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의 관리부실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가 각각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제출시기, 안전관리규정의 수립 절차 및 방법, 제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고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이고,

안 제2호의2에 따른 ‘긴급안전조치’는 현행법 제22조의2제1항²⁰⁾ 및 제38조제1항²¹⁾에 따라 지하개발 사업 또는 지하시설물에 의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안전조치 명령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 등이 긴급하게 취해야 하는 보수·보강 등에 관한 사항임.

동 사항들은 지반침하 사고의 예방 및 이력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생각되는바, 개정안은 동 사항들을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관리 대상 정보로 명시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연구·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²²⁾하도록 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주변 지반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2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시설물에 의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2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연구·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개정안 제47조제2항²³⁾은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안 제1호), 제16조 제2항²⁴⁾에 따른 관련 자료의 검토 및 현지조사 결과(안 제2호), 제46조 제1항 또는 제2항²⁵⁾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하는 사고발생 사실(안 제3호)을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통보 또는 보고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
1.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평가서등에 관한 사항
 3. 제25조·제28조·제32조 및 제5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재개업 신고, 등록말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대행실적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4. 제3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5.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6. 제4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7. 제46조에 따른 지반침하 사고 및 피해 현황·통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3) 개정안

제47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통보 또는 보고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제16조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검토 및 현지조사 결과
3.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하는 사고발생 사실

2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검토 및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사고조사 등) ①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해당 사업 또는 소관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고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들은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인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 규정」²⁶⁾에서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운영²⁷⁾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한 제출·통보·보고가 가능함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③ 개정안 제47조제3항²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안전정보체계를

26)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기관"이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3조제2항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안전정보체계(이하 "JIS"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27)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조(사고발생 사실의 통보) 법 제46조에 따른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 사실을 알게 되거나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로부터 사고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고발생 사실을 JIS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피해사항(사망자수, 부상자수, 피해차량대수)
4. 응급 안전조치 내용
5. 발생규모(폭, 연장, 깊이)
6. 향후 조치계획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제21조(협의내용 등의 공개)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지침 제52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안전평가서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의 접수, 보완 등 처리상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협의내용 전문 등을 지체 없이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검토 및 현지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

28) 개정안

제47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지하개발사업자, 지하시설물관리자 또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지하개발사업자와 지하시설물관리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이는 개정안 제47조제1항이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한 관리 대상 정보에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사항²⁹⁾(안 제1호의2 신설)과 제22조의2 및 제38조에 따른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³⁰⁾(안 제2호의2 신설)을 추가함에 따라,

2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 ① 지하개발사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는 이를 승인하기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의 내용(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의 관리부실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주변 지반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지하개발사업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승인기관의 장으로부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38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시설물에 의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이 안전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관계인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대상에도,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제출해야 하고, 제22조의2 및 제38조에 따른 긴급안전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와 지하시설물관리자’를 추가로 규정하여,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정보체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하정보와 제47조제3항에 따라 지하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서로 부합되도록 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해 관리하도록 하여 데이터·시스템 기반의 지하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고,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하는 행위를 제출·통보·보고로 간주하도록 하여 의무 이행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점 등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91